

인천지방법원 2024. 5. 31 선고 2022가합60560, 2023가합57417(병합)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대한민국의 소송수계인 망 B의 상속재산의 파산관재인 C

원고 보조참가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저스티스

담당변호사 황윤상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권재성, 최선애, 홍성훈

피 고 1. D

2. E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장주석

변 론 종 결 2024. 5. 3.

판 결 선 고 2024. 5. 31.

주 문

-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25,987,81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병합된 소로 인한 부분 및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소송절차를 수계하면서 종전의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부인의 소로 각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보조참가인 A(이하 ‘A’이라고만 한다)은 2020. 11. 12. 사망한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약정금 채권을 가진 채권자이고, 대한민국은 망인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가진 채권자이다.

2) 원고는 망인의 상속재산의 파산관재인으로, 이 소송의 종전 원고이던 A과 대한민국을 수계하였다.

3) 피고들은 망인의 형제들이다.

나. A과 대한민국의 망인에 대한 채권 발생

1) A은 2016. 12. 2. 대전지방법원에 망인 등을 상대로 약정금에 관한 지급명령신청(위 법원 2016차8391)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2. 2. “망인 등은 연대하여 A에게 14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3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 결정을 하였으며, 그 결정은 2017. 1. 2. 망인 등에게 송달되어 2017. 1. 17. 그대로 확정되었다.

2) 망인은,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납세의무 성립일 2015. 8. 31.) 361,807,000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납세의무 성립일 2015. 12. 31.) 91,515,930원, 2016년 귀속 부가가치세 17,135,680원(납세의무 성립일 2016. 6. 30.) 및 그 납부연체로 인한 가산세 등을 체납하였다.

다. 망인의 재산처분 등 관련 경과

1) 망인과 피고들 및 이들의 모친인 F는, 2012. 6. 7. 인천 미추홀구 G 답 31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각 1/4 공유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들은 2016. 12. 28.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망인의 지분(1/4)을 총 매매대금 290,000,000원에 절반(1/8)씩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지분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3) 피고들은 2017. 1. 3. 위 망인의 지분에 관하여 위 지분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들 앞으로 각 1/8 공유지분에 대한 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소송 경과

1) A은 2020. 4. 29. 망인과 피고들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지분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지분매매계약의 취소와 원상회복(원물반환)을 구하는 소(대전지방법원 2020가단7177, 2021가합105815)를 제기하였다.

2) 망인은 위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20. 11. 12. 사망하였다.

3) 대한민국은 2021. 12. 21. 이 사건 지분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지분매매계약의 취소와 원상회복(원물반환)을 구하는 소(인천지방법원 2021가단281868)를 제기하였다.

4) 인천지방법원은 2022. 3. 31.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2021하단101930)를 하였고, 같은 날 원고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 원고는 2022. 11. 28. 위 각 사해행위취소 소송절차를 수계하고 종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원물반환)’를 채무자회생법 제391조에 의한 ‘부인권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가액배상)’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5) 이후 위 대전지방법원 2021가합105815 사건은 파산계속법원으로서 관할법원인 인천지방법원으로 이송되어 이 사건(2022가합60560)이 되었고, 위 인천지방법원 2021가단281868 사건은 합의부로 이송되었으며(2023가합57417), 이 법원은 2024. 3. 29. 이 사건에 위 2023가합57417 사건을 병합하기로 결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13, 15호증(특별한 표시가 없는 한 본소 사건의 서증번호를 의미한다,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병합된 소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그 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파산채권자가 파산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이전에 적법하게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을 파산관재인이 수계하면,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의 소송상 효과는 파산관재인에게 그대로 승계되므로, 파산관재인이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한 후 이를 승계한 한도에서 청구변경의 방법으로 부인권 행사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척기간의 준수 여부는 중단 전 채권자취소소송이 법원에 처음 계속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5다33656 판결).

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소는 종래 사해행위취소소송이었으나 원고가 이를 승계한 후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부인권 행사를 하였다. 부인권은 파산선고가 있는 날부터 2년이 경과하거나 고의부인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이를 행사할 수 없으나(채무자회생법 제405조), 대한민국은 2021. 12.

21.에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였고, 이는 망인에 대한 파산선고(2022. 3. 31.)가 있기 이전이자, 고의부인 대상 행위인 이 사건 지분매매계약일(2016. 12. 28.)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이다. 따라서 병합된 소의 제기는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하고,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망인이 형제인 피고들과 이 사건 지분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피고들에게 각 1/8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행위는, 파산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로서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의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의 부인권 행사에 따른 가액배상으로서 원고에게 각 125,987,81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2)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지분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290,000,000원은, 피고들이 망인의 채무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대신 변제하고 망인에 대해 가지는 구상금 채권 220,125,100원 및 피고들이 2011. 12. 19.부터 2012. 8. 3.까지 사이에 망인에게 대여한 합계 171,150,000원(= 피고 E 합계 131,150,000원 + 피고 D 합계 40,000,000원)의대여금 채권 중 69,874,900원과 상계하였다. 망인은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고들에게 이 사건 지분을 매도하였고, 이는 망인이 변제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며, 매매대금도 상당한 가격으로 책정하였고, 매매대금으로 갈음한 위 220,125,100원은 전액 피고들이 당시 알고 있었던 망인의 다른 채권자들 및 피고들에 대한 망인의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하였는바, 이는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고의부인 행위가 아니다. 또한 피고들은 이 사건 지분매매계약 당시 해당 지분매매가 다른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대위변제 일시	금 액(원)	내용
2016. 12. 28.	20,000,000	H 채무
2017. 1. 13.	30,000,000	I 채무
2017. 1. 13.	94,867,190	국세(공주세무서)
2017. 1. 13.	2,757,910	지방세(공주시)
2017. 1. 13.	5,000,000	국민건강보험공단
2017. 1. 13.	67,500,000	J은행 피담보채무(상속채무)
합계	220,125,100	

나. 고의부인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으로 되는 행위인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는 총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파산재단으로부터 일탈시킴으로써 파산재단을 감소시키는 이른바 사해행위뿐만 아니라, 특정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나 담보의 제공과 같이 그 행위가 채무자의 재산 관계에 영향을 미쳐 특정한 채권자를 배당에서 유리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파산채권자들 사이의 평등한 배당을 저해하는 이른바 편파행위도 포함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6637, 5664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고의부인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함을 알 것’을 필요로 하는데, 특히 편파행위의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부인대상 행위 유형화의 취지를 물각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거래 안전과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파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채권자평등의 원칙을 회피하기 위하여 특정 채권자에게 변제 혹은 담보를 제공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지만, 더 나아가 파산채권자에 대한 적극적인 가해의 의사 내지 의욕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4다18131 판결 등 참조).

나) 파산절차상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파산채권자에게 유해하다고 하더라도 행위 당시 개별적 ·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당해 행위가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상당하였다거나 불가피하였다고 인정되어 일반 파산채권자가 파산재단의 감소나 불공평을 감수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행위의 상당성 유무는 행위 당시 채무자의 재산 및 영업 상태, 행위의 목적 · 의도와 동기 등

채무자의 주관적 상태를 고려함은 물론, 변제행위에서는 변제자금의 원천,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관계, 채권자가 채무자와 통모하거나 동인에게 변제를 강요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등을 기준으로 하여 신의칙과 공평의 이념에 비추어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7다287648, 287655 판결 등 참조).

다)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여 양도하였다면 그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는 반면 그 범위 내에서 공동담보가 감소됨에 따라 다른 채권자는 종전보다 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채권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7873 판결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와 갑 제13호증, 을 제2, 3, 4, 7 내지 9,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이 사건 지분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실제로 받지 않고 피고들의 채권과 상계처리 하는 방식으로 다른 파산채권자들에게 불공평을 초래하는 편파변제를 하였고, 망인도 당시 이로 인하여 다른 파산채권자들을 해하게 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지분매매계약은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 따른 고의부인의 대상이 된다.

가) 망인이 이 사건 지분매매계약 체결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피고들이 이 사건 지분매매계약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8 공유지분을 취득한 반면에, 피고들이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망인에게 현금이나 수표를 교부하거나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지분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현실적으로 지급한 사실은 없다.

다) 피고들이 망인의 매매대금 채권과 상계하였다고 주장하는 대여금 채권은 오래 전에 발생한 것으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여서 망인의 지분을 처분하더라도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망인의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반드시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우선적으로 변제할 이유가 없고, 설령 피고들이 주장하는 위 대여금 채권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더라도 매매대금 중 일부를 위 대여금채권 일부의 변제로 갈음 내지 상계하였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대물변제에 해당한다.

라) 그리고 피고들이 망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고 취득하였다는 구상금 채권 220,125,100원의 경우, 피고 D가 직접 대신 변제한 20,000,000원 외에 나머지 변제금은 모두 망인의 모친인 F가 2017. 1. 13.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공동담보로 하여 F 명의로 K은행과 대출계약을 체결하여 마련한 것으로, 피고들과 F 사이의 내부적인 부담비율 약정과는 별개로 망인과의 관계에서 위 변제에 따른 구상금 채권 대부분을 가지는 채권자는 위 대출의 채무자인 F이다. 또한, F 명의의 위 대출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 및 피고 E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이 공동담보로 제공되었고, 그 대출금(총 대출액 640,000,000원) 중 일부가 망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하나, 이는 피고들이 취득한 망인의 지분에 대한 강제경매(채권자 L)를 취하시켜 피고들을 비롯한 나머지 공유지분자들의 소유권을 행사를 보존하기 위함이 주된 목적으로 보이고, 나머지 대출금은 이 사건 지분매매계약 체결 전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었던 을구 8번, 10번, 11번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채무자 M 내지 피고 E)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마) 결국 망인이 망인의 매매대금채권과 피고들의 대여금 채권 내지 구상금 채권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피고들로부터 매매대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않고 이 사건 부동산의 망인 지분을 피고들에게 넘겨준 것은, 모든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재정적 파탄상태에서 자신의 적극재산 대부분을 구성하는 이 사건 토지지분을 특정 채권자인 피고들에게 대물변제로 양도한 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피고들이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는 반면, 그 범위 내에서 공동담보가 감소됨에 따라 다른 채권자들이 종전보다 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에 해당하는바, 이는 고의부인 대상행위 유형인 편파변제에 해당함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하는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부인할 수 없으나, 그와 같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 자신이 그 선의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7다287648, 287655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 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이 인정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기초하여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06986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채무자회생법상 부인의 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와 당사자 피고 E의 진술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지분매매계약 당시 피고들이 선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망인과 피고들은 형제 관계이다.

② 망인은 A에게 2019. 5. 10. 자로 “본인(망인을 말한다)은 귀하(A을 말한다)와 다른 채무자들에 대한 수억 원의 채무를 면할 생각으로, 본인 소유 아파트를 모친과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명의신탁한 사실 등이 있고, 현재 남아있는 부동산인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한 본인의 1/4 지분을 본인의 형제들(피고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명의신탁하여 두었다. 만약 귀하에게 약속한 날까지 금원을 변제하지 못한다면,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한 본인의 1/4 지분에 대하여 진정명의자인 본인 앞으로 (소유권등기)이전하겠다. 본인의 형제들도, 본인이 N, H, I에 대한 채무 및 국세, 지방세 등의 채무금 외에 귀하 및 다른 사람들에게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정을 잘 알고 있다. 이 사건 지분매매계약은 본인이 채무를 면할 목적으로 형제들과 법무사의 조언을 받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실상은 우선 형제들에게 명의 등기 이전하였다가, 나중에 본인의 자녀에게 명의 이전 등기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③ 피고 E은 이 법원의 당사자신문과정에서 “망인은 본인한테 채권 관련 얘기를 안 하다가, (급한 상황에)닥쳐서야 ‘사채가 있는데 우선은 내가 끌고 간다’, 전화해서 ‘얼마만 보내 달라’ 말하고, 그것도 몇 번 속았고, 가족들도 많이 속았고, 그러니까 이제 믿을 수가 없다”, “2016. 12. 28.자 약정서 작성일(이 사건 지분매매계약일과 동일한 날이다) 이전부터 망인이 경제적으로 몹시 어려웠던 사정임을 알고 있었고, 위 약정서를 작성할 당시 망인이 소소하게 한 두 개, 몇 백 정도의 다른 채무가 있다고 말하였고, 피고 E은 망인에게 다른 채무가 존재하는지에 여부에 관하여 물어보고 싶지도 않았고, 물어본다고 망인이 대답할 것 같지도 않아서 더 물어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부인권 행사의 효과

1) 관련 법리

가) 민법상 사해행위취소권과 달리 채무자회생법은 부인권 행사의 효과로서 가액배상을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부인권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부인권 행사의 효과로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0다50275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제3자에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한 재산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이고, 채권자취소나 부인권행사의 대상인 행위는 이와 같이 산정된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책임재산의 범위 내에서 성립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다205073 판결 등 참조).

나) 채권자취소권은 재판상 청구로 행사하여야 하고, 채권자취소소송은 법률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형성소송이어서 그 취소 판결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법률행위에 대한 취소의 효과가 발생하는 데 반하여, 부인권 행사의 경우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면 채무자회생법 제397조 제1항에 따라 그 대상이 되는 행위는 즉시 소급하여 무효로 되어 채무자의 재산이 원상으로 회복되고 부인소송은 단지 위와 같은 원상회복에 따른 이행을 구하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목적물 가액의 산정 시점은

부인권 행사의 효력발생일, 즉 부인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된 날로 보아야 한다.

2) 원상회복의 방법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지분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에는 등기부상 을구 8번, 10번, 11번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이 사건 지분매매계약이 이루어진 이후인 2017. 1. 1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7. 1. 12.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제3자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며, 같은 날 위 8번, 9번, 11번 근저당권은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이러한 경우 부인권 행사에 따른 원물반환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가액배상의 형태로 반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3) 구체적인 가액배상의 범위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와 병합된 소의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O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부인권 행사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각 125,987,811원(= 부인권 행사에 따른 가액배상 총액 251,975,623원 $\times$ 1/2, 원 미만은 버린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원고의 부인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2022. 11. 28.자 각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이 최종적으로 2022. 12. 2. 피고들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나) 부인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피고들에게 도달한 날과 가장 가까운 날로서 객관적으로 확인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망인의 지분 가액은, 감정인의 가격조사 완료일인 2021. 7. 20. 기준 350,377,500원(= 이 사건 토지 전체 평가금액 1,401,510,000원 $\times$ 1/4)이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지분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위 을구 8번, 10번, 11번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망인의 지분에 상응하는 금액이 총 98,401,877원(= 8번 57,757,620원 + 9번 6,417,514원 + 11번 34,226,743원)임을 자인하고 있다(본소의 2023. 8. 17.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및 병합된 소의 2023. 7.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해당 금액 상당은 이 사건 지분매매계약체결 당시 망인의 채권자들에게 공동담보로 제공될 수 있었던 적극재산을 산정할 때 제외해야 한다.

라) 따라서 원고는 부인권 효력발생일 기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망인의 지분 가액에서 이 사건

지분매매계약 당시 설정되어 있던 망인 지분에 상응하는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 251,975,623원(= 350,377,500원 - 98,401,877원)의 한도에서 부인권을 행사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

마. 소결

따라서 피고 D, E은 원고의 부인권 행사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각 125,987,811원(= 251,975,623원 × 1/2)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봄빛누리

재판장 판사 신 종 환, 판사 안 희 경